

「2026년 의료 AI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관 2차 모집 공모 안내서

「2026년 의료 AI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관
추가 모집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5월

한국보건 의료정보원장

- 과제수행 주요절차 -

구분	세부 내용	비고
모집 공고 및 홍보	사전 공고 게시	의정원-기업
	↓	
선정 및 매칭	사업 신청공고 및 접수	의정원-기업
	↓	
	접수 종료 후 1차 서면 평가	의정원(평가위원회)
	↓	
	2차 종합 평가	의정원(평가위원회)
	↓	
사업 협약 및 계약 체결	후보 수요기업 선정	기업-의정원
	↓	
	수요-공급 매칭 후 최종 선정	기업-의정원-병원
	↓	
사업 수행 및 이행점검	전담-수요-공급 3자간 협약 체결	의정원-기업-병원
	↓	
	전담-공급기관 계약 후 선금 지급	의정원-병원
	↓	
	데이터 준비 및 연구 심의	병원
	↓	
결과 평가 및 정산	데이터 가공 및 제공	병원
	↓	
	데이터 활용 및 분석	기업
	↓	
성과 관리	결과보고서 제출	병원
	↓	
	사업비 위탁 정산 및 잔금 지급	병원-의정원
	↓	
	사업 종료보고서 제출	기업-병원
	↓	
	활용 보고서 제출	기업
	↓	
	우수 사례 및 성과 추적관리	의정원

목 차

I. 추진 배경 및 목적	1
II. 사업 개요	2
III. 모집 공고 세부 추진계획	5
IV. 수요기관 신청 안내	8
V. 사업수행 일반사항	16

I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확대와 함께 의료 AI 기술 고도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있는 의료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지원 필요성 증대
- 1차 모집을 통해 확인된 의료 데이터 활용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더 많은 기업이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참여 기회 추가 확대

□ 사업 추진근거 및 관련 법률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3조(기술개발의 보호·육성), 제10조(보건의료정보의 진흥)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8월)에 따라 임상정보의 활용 활성 정책 추진을 위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보건복지부훈령)
 - 각 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II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사업명) 의료 AI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
- (추진목적) 의료기관(공급)에서 의료 AI 기업(수요)으로 의료데이터가 흐르지 않는 병목 현상을 해소하여 혁신적인 의료 AI 개발 촉진
- (관리·운영 전문기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 (수행기관)
 - 수요기관 : 의료 AI 연구개발* 중소기업** (10개소 내외 선정)
 - * 진단 보조 솔루션, 영상 판독 솔루션, 워크플로우 자동화 시스템 등 의료 데이터 기반 AI 기술 활용 제품 및 서비스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기업
 - 공급기관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45개소)
 - ※ 단, '26년 신규 참여기관인 제주한라병원은 본 사업 매칭 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기간) 협약 체결일 ~ '26.12.31.
 - ※ 본 사업은 단년도 예산사업으로 회계정산의 범위는 '26년도 예산에 한함
 - 다만, 데이터 활용 등 성과관리를 위한 협약은 '27년까지 유효함
- (예산) 800백만원

□ 지원내용

- (바우처) 의료 AI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 (80백만원 x 10개사)
 - ※ 지원금액은 과제단가(소형과제 100백만원)의 80%이며, 기업의 자기부담금은 과제단가의 20% 내외(소기업 15%, 중기업 25%) 적용
 - ※ 과제단가는 부가가치세(VAT) 포함된 금액이며, 정부지원금 및 자기부담금도 VAT 포함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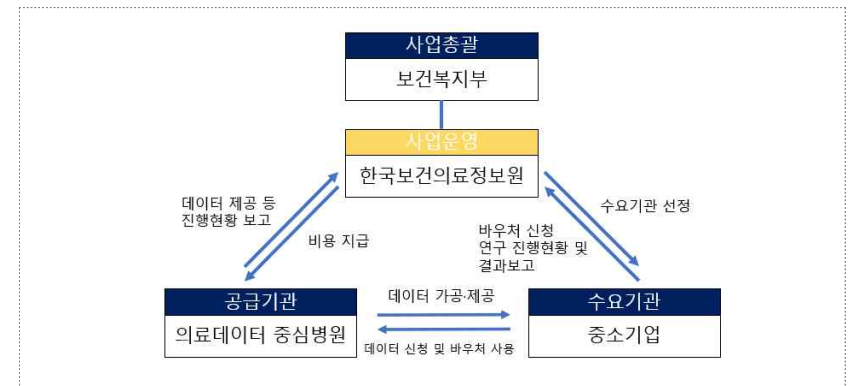
※ 의료 AI 데이터 활용 바우처 : 수요기관이 의료데이터 기반 AI 기술(예: 예측 모델링, 영상분석, 디지털헬스 등) 활용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급기관에 요청, 데이터 제공 소요 비용(예산 지원)을 공급기관에 지불하는 방식

- (바우처 지급방식) 바우처는 수요기관(기업)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 않으며, 전담기관(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공급기관(의료기관)에 지급함

※ 해당 계약에 따라 수요기관에 데이터 및 가공분석 서비스 등이 정상적으로 인도 완료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구체적인 비용 항목(인건비, 장비·SW, 외주비, 분석환경 운영비 등)의 처리 및 집행 권한은 공급기관의 내부 재량에 위임함

- (수요-공급 매칭) 데이터 수요기업과 의료기관 간 매칭을 통해, 실질적 의료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촉진
- 가명처리, 분석환경 제공, 연구윤리(IRB), 데이터심의(DRB) 등의 절차를 포함한 데이터 제공 전주기 지원 체계 운영

□ 추진체계 및 역할



○ (기관별 주요 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보건복지부 (사업총괄)	• 의료 AI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관리 총괄
한국보건의료 정보원 (사업운영)	• 의료 AI 데이터 수요기관 선정 및 수요-공급 매칭 • 데이터심의위원회 지원 및 컨설팅 • 과제 관리 및 이행상황 점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공급기관)	• 활용·개방 가능 데이터 범위 설정 및 카탈로그 게재 • 데이터 제공을 위한 내부 절차 수행,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 • 연구기관 수요에 맞춘 데이터 가공 및 연구 수행 지원 •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분석환경 연계·제공
중소기업 (수요기관)	• 연구 기획 및 바우처 사용을 통한 데이터 신청 • 데이터 분석 및 연구 결과 보고

□ 추진 절차

구분	추진 내용
① 모집 공고 (공모기간: 약 3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게시) 우리원 홈페이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포털(K-CURE),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 (사전공고) 2026.5.20.(수) ~ 5.26.(화) ○ (신청접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포털(https://k-cure.mohw.go.kr/) ○ (공모기간) 2026.5.27.(수) ~ 6.16.(화) 17:00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설명회 미운영, 1차 모집 사업설명회 녹화본으로 대체 제공 ※ 사업설명회 녹화본 및 자료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포털(K-CURE) > [의료 AI 지원사업] > [의료 AI 바우처] > [공지사항] 게시판 > 상단 고정 게시물 ("2026년 의료 AI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관 사업설명회 자료 공유) 참고 ※ 공급기관(의료기관) 컨소시엄별 수요기업 대상 데이터 확인·상담 지원
② 신청서류 검토 및 매칭 대상기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성평가) 수요기관의 신청 서류 및 증복지원 등 기본 요건 확인 ○ (1차 서면평가) 수요기관이 제출한 기업 소개 및 연구계획서를 기반으로 기술성, 시장성, 수행역량 등 평가 ○ (2차 종합평가) 수요기관 종합 평가를 통한 매칭 대상기업 선정
③ 수요-공급기관 매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수요기관-공급기관 간 매칭을 통해 최종 수요기관 선정 ○ 미매칭으로 인한 잔여 과제에 대하여 후보 기업 선정 가능
④ 사업 수행 협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기관-공급기관 간 지원범위 합의 및 사업수행계획 확정 ○ 한국보건의료정보원-수요기관-공급기관 3자 간 사업 수행 전자 협약 체결 ○ 수요기관은 협약 내용에 따라 바우처 사용
⑤ 연구 심의 및 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기관의 데이터 활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데이터 기반 연구심의 (IRB, DRB) - 의료데이터 활용 수요기관-공급기관 공동연구 계약 체결 ○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공급기관 계약 체결 ○ (선금지급) 수요기관 자기부담금 현금 선이행(수요기관→공급기관) 확인 후 공급기관 바우처 선금 지급(한국보건의료정보원→공급기관)
⑥ 데이터 분석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개발 또는 검증 등 데이터 분석 ○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회
⑦ 이행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기관 점검) 데이터 제공 등 감리 및 바우처 집행 점검 ○ (수요기관 점검) 사업 이행점검 및 자기부담금 현물 집행점검
⑧ 결과보고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기관-공급기관 수행 결과 보고 및 평가 ○ (잔금지급) 바우처 지급(한국보건의료정보원→공급기관)
⑨ 성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기관) 데이터 활용보고서 제출 ○ (사례공유) 수요/공급기관 우수 매칭 사례 발굴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Ⅲ

모집공고 세부 추진계획

① 모집 공고 (527(수) ~ 616(화), 3주 간)

- **(공고확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포털(K-CURE),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홈페이지,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 **(사전공고)** 사업 개요, 추진 일정, 참여 절차 등에 대한 사전안내 실시
- 기간 : 2026. 5. 20.(수) ~ 5.26.(화)
- **(신청접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포털(<https://k-curemohw.go.kr/>)을 통해 신청 접수
 - ※ 포털 접속 > [의료 AI 지원사업] > [의료 AI 바우처] > [신청] 페이지
 - ※ 신청 전 보건의료데이터 활용포털(K-CURE) 회원가입 필수
 - ※ 회원가입 시 미검색 기업의 경우 전담기관에 별도 문의 후 진행
- **(공고기간)** 2026. 5. 27.(수) ~ 6. 16.(화), 17:00까지 * 5.27.(수)부터 신청 접수
- **(접수상태 확인)** 진행상태가 '접수대기'로 표시되는 것은 정상적으로 접수된 상태이며, 전담기관의 접수 처리 후 '접수완료'로 변경됨

② 신청서류 검토 및 매칭 대상기업 선정 (~7월)

- ① (적격성 검토) 제출된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충족 여부, 타 사업 중복 지원 여부 등 기본 요건에 대한 사전 검토 실시
- ② (1차 서면평가) 적격성 검토를 통과한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과제 유형별 평가위원이 연구계획서를 중심으로 기술성·시장성·수행역량 등을 평가
- ③ (2차 종합평가) 서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동일한 평가위원과 기준으로 평가위원회 논의를 통한 종합평가 진행
 - ※ 소형과제는 발표 없이 평가위원회 논의를 통한 종합평가로 진행
- ④ (최종 선정) 종합평가 점수에 가점을 반영하여 최종 매칭 대상기업(수요기관) 확정 및 통보
 - ※ 비수도권 의료기관을 단일 1지망 또는 다기관 매칭 희망기관(후보기관은 해당 안 됨)으로 신청 시 가점(2점)
 - ※ 선정 결과는 개별 안내 및 세부 평가 결과(평가의견, 평가점수 등)는 비공개

③ 수요-공급기관 매칭 및 협약 체결 (~8월)

- 매칭 대상기업(수요기관)-공급기관 간 매칭을 통해 최종 수요기관 선정
 - 공급기관 데이터 큐레이션 등을 통한 원활한 수요자-공급자 매칭 지원
 - 최종 선정된 1순위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급기관 우선 매칭
- 한국보건 의료정보원-수요기관-공급기관 3자 간 사업 수행 협약 추진
 - 데이터 활용 목적에 따른 데이터 변수 및 제공범위에 관한 내용
 - 수요기관 연구심의(IRB), 데이터심의(DRB) 지원에 관한 내용
 - 연구진행 및 성과보고 등 사업관리에 관한 내용 등
- 수요기관은 협약 내용에 따라 공급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 제공 준비, 가공, 분석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이용
 - 수요자 요구(Needs)에 맞춘 데이터* 제공지원

* CDW, CDM, 질환별 레지스트리, 특화데이터, PACS, 병리이미지, 음성, ECG 등

④ 연구심의 및 계약 체결 (8월~)

- 협약된 연구내용에 따라 연구계획서 작성 및 IRB 심의 지원
- 기관 내 안전한 가명·익명 데이터 제공심의(DRB) 지원
 - * 다기관 과제의 경우 공용DRB를 활용하여 진행하여야 함
- 실현가능성(Feasibility) 등 최종검토 및 연구변수조정
- 데이터 분석 환경 지원(원격형 VDI, 폐쇄분석실 등)
 - R, Python, SAS, SPSS 등 분석환경 지원
- 데이터 스크립트 및 분석결과 반출 지원
- 한국보건 의료정보원-공급기관 간 계약 체결
- 바우처 사업비 선금 지급(한국보건 의료정보원→공급기관)

⑤ 데이터 활용 및 분석 (8월~11월)

- 공급기관이 제공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탐색, 라벨링, AI 학습 또는 검증 등 연구 수행

⑥ 이행점검 (9월~11월)

- 공급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데이터 제공 이행 여부 및 바우처 집행 내역 점검
-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 진행 상황 및 자기부담금 이행 여부 점검

⑦ 결과보고 및 평가 (~11월)

- 수요기관 및 공급기관의 사업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수행
- 바우처 사업비 잔금 지급(한국보건 의료정보원→공급기관)

⑧ 성과관리 (11월~ '27.12월)

- 수요기관 데이터 활용 성과보고서 제출(~'27.12월)
 - 수요기관은 사업 종료 후, 협약된 데이터 활용 내용을 바탕으로 데이터 활용 결과, AI 개발·검증 성과, 활용 계획 등을 포함한 데이터 활용 성과보고서 제출
 - 제출된 성과보고서는 사업 성과 관리 및 후속 활용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수요/공급기관 우수 매칭 사례 발굴
 - 데이터 활용 성과, 협업 방식, 사업 수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요-공급기관 간 우수 매칭 사례를 발굴
 - 발굴된 우수 사례는 향후 사업 운영 개선, 성과 확산 및 홍보 자료로 활용
- 데이터 활용 활성화
 - 의료 AI 활용 플랫폼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의 중장기적 활용 이력 관리 및 성과 추적
 - 공동 활용연구 및 제3자 제공을 위한 데이터셋 카탈로그 및 메타데이터 공개로 타 연구자 및 기업의 데이터 재사용 가능성 및 협력 기회 창출
 - 참여기관은 사업 성과 홍보를 위해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협약 체결 후 연구요약서 공개

IV 수요기관 신청 안내

□ 수요기관 대상 범위

○ 의료 AI 기술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운영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기업

- 실수요 반영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과제단가(소형과제 1억) 대비 자기부담금(중기업 25%, 소기업 15% 이상) 부담**

* 최종 평가에서 동점기업 발생 시 자기부담금 부담 비율이 높은 기업 우선 선정

□ 과제 구성 및 신청 형태

○ **(과제구성)** 소형과제는 다기관·멀티모달·특수데이터 등 별도의 지원 조건이 없으므로, 다기관 과제로 신청 가능

※ 다기관 신청 시 매칭 가능한 공급기관(의료기관)은 최대 5개이며, 서로 다른 컨소시엄에 속한 의료기관을 함께 신청하는 것도 가능

○ **(컨소시엄 신청)** 다수 수요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동시 신청 가능

※ 대표 수요기관 1곳을 지정하여야 함

※ 참여기업 중 중기업이 포함된 경우, 소기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자기부담금은 중기업 기준 비율(25% 이상)을 적용

※ 제출서류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각각 제출(연구계획서·소개서 등 공통 서류 포함)

< 참고: 수요기관 자기부담금 구성표 >

구분	내용										
중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 단가의 25% 를 자기부담금으로 매칭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의 10% 이상 현금 부담해야하며, 나머지는 현물 부담 										
	<table border="1"> <tr> <td style="text-align: center;">총사업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정부지원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자기부담금(현금+현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5%</td> <td style="text-align: center;">80%(고정)</td> <td style="text-align: center;"> <table border="1">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과제단가의 2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현금 (자기부담금의 10%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물 (=자기부담금-현금)</td> </tr> </table> </td> </tr> </table>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현금+현물)	105%	80%(고정)	<table border="1">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과제단가의 2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현금 (자기부담금의 10%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물 (=자기부담금-현금)</td> </tr> </table>	과제단가의 25%		현금 (자기부담금의 10% 이상)	현물 (=자기부담금-현금)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현금+현물)								
105%	80%(고정)	<table border="1">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과제단가의 2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현금 (자기부담금의 10%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물 (=자기부담금-현금)</td> </tr> </table>	과제단가의 25%		현금 (자기부담금의 10% 이상)	현물 (=자기부담금-현금)					
과제단가의 25%											
현금 (자기부담금의 10% 이상)	현물 (=자기부담금-현금)										
예시) 소형과제(1억)의 경우 정부지원금(8,000만원) +자기부담금(2,500만원(현금 250만원+현물 2,250만원))=총사업비(1억 500만원)											

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 단가의 15%를 자기부담금으로 매칭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의 5% 이상 현금 부담해야하며, 나머지는 현물 부담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현금+현물)			
	95%	80%(고정)	<table border="1">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과제단가의 1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현금 (자기부담금의 5%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물 (=자기부담금-현금)</td> </tr> </table>	과제단가의 15%		현금 (자기부담금의 5% 이상)
과제단가의 15%						
현금 (자기부담금의 5% 이상)	현물 (=자기부담금-현금)					

예시) 소형과제(1억)의 경우 정부지원금(8,000만원)
 +자기부담금(1,500만원(현금 75만원+현물 1,425만원))=총사업비(9,500만원)

기업유형	자기부담금 비율	자기부담금 최소조건	현금 부담기준 (나머지는 현물)	현금 최소조건
중기업	25%이상	2,500만원	자기부담금의 10%이상	250만원
소기업	15%이상	1,500만원	자기부담금의 5%이상	75만원

- ◆ **(자기부담금(현금 및 현물))** 현금은 데이터 제공·분석 등 소요 비용에 대해 수요기관이 공급기관에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현물은 인건비, 자산 등 내부 자원을 실제로 투입하고, 관련 내용을 적절하게 산정·계상하여야 함.
- ◆ **(자기부담금 현물 인정 기준)** 인건비, 자산 등
 - (인건비) 본 사업에 실제 참여한 수요기관 내부 인력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
 - *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내역, 업무 투입 근거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자산) 이번 연구 및 개발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 도입 또는 신규 구입 자산
 - * 본 사업 과제 내용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명확해야함
 - * 이전 구매내역(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실제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필수
 - * 내용연수가 5년을(2026년 8월 기준) 초과하지 않는 도입 자산(장비, SW, 설비 등)에 한해 구입가(VAT포함) 20% 이내로 인정
- ◆ **(자기부담금 우선집행)** 총사업비 집행에 있어 자기부담금은 우선 집행이 원칙이며, 자기부담금 중 현금의 경우 계약 체결 이후 수요기관이 공급기관에게 선이행하여야 한다. 자기부담금(현물)은 사업 수행기간 중 전담기관의 이행점검을 통해 확인한다.

○ 수요기관 참여 제한사항

- **(동일·유사 과제)** 과제 중복심의*를 통해 타 정부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과제와 동일**한 과제

* 전담기관이 타 정부지원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실시 후 필요시 신청기관에게 기존 수행 과제와의 중복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보건산업진흥원 등 유사 사업 수행기관의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지원 과제와 과제명, 과업 내용, 예상 데이터 산출물, 참여 인력 등 차별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의료 AI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동일과제 요건**

- 동일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과제로, 동일한 공급기관의 동일한 데이터로 수행되는 과제

- (바우처-테스트베드 간 중복지원 제한) '25년도 의료 AI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 선정기업은 본 사업에 중복지원 및 선정이 가능하나, '26년도 테스트베드 선정기업은 사업 간 연계성 및 선후관계를 고려하여 동일 제품으로 중복지원 및 선정 불가
- (1차 선정기업 참여 제한) '26년도 1차 모집 시 최종 선정된 기업은 2차 모집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개 과제 신청) 수요기관은 본 사업에서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2개 이상의 과제 신청은 불가
- (부정당 기업) 조달청 나라장터 부정당제재정보공개에서 조회되는 부정당사업체(국가계약법 제27조),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휴업 및 세금(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제재 조치) 최근 3년 이내 정부 사업에서 제재 조치를 받은 기업
- (동일대표 多사업자) 동일한 대표자로 다수 사업체 보유 시 1개의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 (다년지원) 전년도('25년) 선정 수요기관의 경우 재지원은 가능하나, 재지원 시에는 기존 과제와의 차별성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 수요기관 선정 가점사항

- (비수도권 의료기관 매칭) 비수도권 의료기관과의 매칭을 희망하는 과제에 대해, 지역 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촉진 및 의료 AI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목적으로 선정평가 시 2차 최종 평가점수에 가점 2점 부여
 - ※ 단일 1지망 또는 다기관 매칭 희망기관(후보기관은 해당되지 않음)으로 신청 시
 - ※ 해당 비수도권 의료기관은 별도 표시 예정

□ 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5. 27.(수) ~ 2026. 6. 16.(화) 17:00
-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를 PDF파일로 변환하여 압축파일로 묶어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포털(<https://k-cure.mohw.go.kr/>)내 의료 AI 바우처 신청 페이지에 제출

※ 포털 접속 > [의료 AI 지원사업] > [의료 AI 바우처] > [신청] 페이지

- 첨부파일명: '26년 의료 AI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 2차 신청_기업명'
- 파일 업로드 용량은 최대 100MB으로 제한됨

□ 제출 서류

- (적격성 검토) 수요기관이 제출한 신청 서류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및 중복지원 여부 등 기본 요건을 검토하여 선정
- 정상 제출되지 않은 서류*는 적격성 평가시 '부적격' 처리되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불가
 - * 필수서류 누락,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이 공고기간 이전에 만료된 경우, 공고에서 요구한 서식 또는 제출 방식과 상이한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경우 등
- 별도 보완 기한 내 미제출, 수요기업 실수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수요기관에 있음

□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연구계획서 작성) 연구계획서에는 개인정보(담당자) 및 공급기관 정보(병원명)를 기재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A병원' 등으로 익명화하여 작성
- (총괄책임자·제출 계정) 총괄책임자는 과제를 총괄 수행·관리하는 인원으로 수요기관 내부에서 지정하며(반드시 대표자일 필요 없음), 포털 접속은 실무 담당자 계정으로도 제출 가능
- (권소사업 신청 시 서류) 제출서류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각각 제출(연구계획서·소개서 등 공통 서류 포함)

< 참고: 제출 서류 리스트 >

연번	제출 서류명	구분	비고								
1	수요기관 신청서	필수	※ 서식 1 / 대표자 서명 또는 법인 직인 날인 모두 인정								
2	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 국세는 홈택스(hometax.go.kr), 지방세는 정부24(gov.kr)에서 발급 ※ 공고일 이후 발행분 인정								
3	표준재무제표증명	해당시 필수	<p>※ 설립 5년 미만 기업 제출 대상 (신용평가등급서 제출 시 해당 서류 제출 불필요)</p> <p>※ 설립 1년 미만: 내부 기업용 재무제표 (표준재무제표증명 대체 서류)</p> <p>※ 설립 1년 이상 3년 미만: 공고일 기준 최근 1~2개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1년 이상 기업은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결산·세무신고 미완료 등으로 제도적으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내부 기업용 재무제표를 대체 서류로 제출 할 수 있음 * 표준재무제표 증명 발급 불가 소명서(형식 자율) 제출 <p>※ 설립 3년 이상 5년 미만: 공고일 기준 최근 3개년</p> <p>※ (발급) 정부24(gov.kr) 또는 홈택스(hometax.go.kr)</p> <p><참고: 내부 기업용 재무제표 필수 항목(형식 자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20%;">제출대상</td> <td>① 설립 1년 미만 기업 ② 설립 1년 이상이나 결산·세무신고 미완료 등으로 발급 불가인 기업 ※ ② 제출대상에 한해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 불가 소명서(형식 자율) 제출</td> </tr> <tr> <td>작성 기준일</td> <td>- 공고 마감일 직전 분기 말 기준(2026.3.31.)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해당 기준일 재무제표 작성이 어려운 경우, 2025.12.31. 기준 자료 제출 가능 - 필요 시 전담기관은 2026.3.31. 기준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td> </tr> <tr> <td>세무사 확인원</td> <td>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포함 ※ 세무사 확인이 불가한 경우 불가 소명서(형식 자율) 제출</td> </tr> <tr> <td>대표자 확인</td> <td>서명 또는 직인 포함</td> </tr> </table>	제출대상	① 설립 1년 미만 기업 ② 설립 1년 이상이나 결산·세무신고 미완료 등으로 발급 불가인 기업 ※ ② 제출대상에 한해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 불가 소명서(형식 자율) 제출	작성 기준일	- 공고 마감일 직전 분기 말 기준(2026.3.31.)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해당 기준일 재무제표 작성이 어려운 경우, 2025.12.31. 기준 자료 제출 가능 - 필요 시 전담기관은 2026.3.31. 기준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세무사 확인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포함 ※ 세무사 확인이 불가한 경우 불가 소명서(형식 자율) 제출	대표자 확인	서명 또는 직인 포함
제출대상	① 설립 1년 미만 기업 ② 설립 1년 이상이나 결산·세무신고 미완료 등으로 발급 불가인 기업 ※ ② 제출대상에 한해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 불가 소명서(형식 자율) 제출										
작성 기준일	- 공고 마감일 직전 분기 말 기준(2026.3.31.)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해당 기준일 재무제표 작성이 어려운 경우, 2025.12.31. 기준 자료 제출 가능 - 필요 시 전담기관은 2026.3.31. 기준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세무사 확인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포함 ※ 세무사 확인이 불가한 경우 불가 소명서(형식 자율) 제출										
대표자 확인	서명 또는 직인 포함										
4	매칭 희망 공급기관(의료기관) 사전협의확인서	해당시	※ 서식 5 ※ 각 공급기관 데이터 큐레이터를 통한 사전협의만 인정 ※ 데이터 큐레이터 서명 필수(연구책임자·교수 서명 불가) ※ 기관장 직인 불필요								

※ **사업기간 5년 이상** 기업은 신용평가등급서* 정보를 신청서에 명시하고, 과제 선정 시 증빙 제출

* 2025년 귀속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신용평가등급을 명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을 포함하여야 함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26.5.27.) 이후 발행분만 인정

※ 제출된 자료는 본 사업의 심사·평가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추후 반환 불가

□ 공급기관 사전협의 및 데이터 큐레이터 컨택 안내

- (사전 매칭 미운영) 본 2차 모집은 사업설명회 및 사전 매칭데이를 운영하지 않으며, 공급기관(의료기관) 관련 협의는 수요기관이 데이터 큐레이터와 개별 컨택·사전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
- (데이터 큐레이터 컨택) 희망 공급기관의 데이터 큐레이터는 다음 경로로 연락(이메일 문의) 가능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포털(K-CURE) > [사업소개] > [의료데이터중심 병원] > 희망 [컨소시엄] 클릭 > [데이터 큐레이터] > [이메일 문의]
- (데이터 활용 협의) 데이터 카탈로그에 명시되지 않은 데이터의 제공 가능 여부, 전향적 데이터 수집 가능 여부 등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공급기관의 데이터 큐레이터와 협의를 통해 결정

□ 수요기관 선정 기준

- 수요기관의 수행역량 및 의지, 기술성,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하여 선정

< 수요기관 선정기준(안) >

항목	세부지표 (배점 / 총 100점)
수행역량·의지 (50점)	- 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계획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10)
	- 지원 규모 및 목표 제품·서비스 대비 활용 예정 의료데이터 유형·범위의 적절성 및 제공 가능성(10)
	- 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개발 수행 환경의 적절성(5)
기술성·사업화 가능성 (50점)	- 참여 인력 구성의 적절성 및 우수성(의료데이터 활용 경험, 사전 준비 등)(10)
	- 국고보조금 대비 자기부담금(중기업 25%, 소기업 15%) 출자 여부 및 가능성(15)
	- 사업 분야, 핵심보유기술과 연구계획 간 부합 여부 및 정도(10)
기술성·사업화 가능성 (50점)	- 해당 분야 경쟁기술 대비 보유기술(스타트업의 경우 개발예정기술)의 우수성(10)
	- 의료데이터 활용 사업화 시 파급효과(10)
	- 최종 제품(서비스)의 보건·의료분야 적합성 및 시장성(10)
	- 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가능성(사업화 목표 달성 가능성)(10)

□ 최종 바우처 지원대상 선정 및 바우처 지급

- 서면·대면평가를 통해 10개 매칭 대상기업(수요기관) 선정
 - 가점을 반영한 **선정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자기부담금 출자비율이 높은 순**으로 순위 선정
- **(매칭 절차)** ①전담기관(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매칭 대상기업(수요기관)이 제출한 연구계획서 및 데이터 요구명세서를 매칭 희망 공급기관에 제공하여 **매칭 가능여부(데이터 제공 가능 여부 등) 확인** ②공급기관은 매칭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공급기관 매칭 의견서 작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매칭 대상기업(수요기관)-공급기관 간 매칭 추진
 - ※ 공급기관 데이터 제공 불가, 공급기관 쏠림 등으로 인한 매칭 불성립 시 **최대 3회에 한하여** 차순위 매칭 희망 공급기관과 재매칭 가능
- **(매칭 성립 우선순위)** 최종 선정된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기관 우선 매칭
- **(매칭 대상)** 매칭 대상기업(수요기관)이 신청 시 제출한 **매칭 희망 공급기관 순위**를 기준으로 매칭 추진
- **(공급기관 매칭 한도)** 공급기관은 **최대 5개 과제**까지 매칭 가능
 - ※ 신청현황과 공급기관 여건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으나, 특정 공급기관으로의 매칭 희망 쏠림에 따라 매칭이 불성립될 수 있음
 - ※ 공급기관의 한도는 1차 바우처 지원사업, 테스트베드과 별도로 적용
- 매칭 결과 발표
 - 매칭 결과는 신청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개별 이메일 통지하며, 선정 기업에 한하여 세부 매칭 내용 및 향후 절차 안내
- 최종 선정 및 협약 체결
 - 매칭이 완료된 경우, 수요기관-공급기관 간 **지원 범위 합의 및 사업 수행계획 확정**
 - 수요기관-공급기관-전담기관(한국보건의료정보원) 간 **3자 사업 수행 협약 체결**

- 3자 협약이 체결된 수요기관을 최종 바우처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며, 바우처 사업비는 협약 내용에 따라 전담기관이 공급기관에 지급
- 수요기관은 협약 내용에 따라 공급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 제공 준비, 가공, 수집·생성, 분석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이용

□ 일반사항

- 의료데이터 수요기관의 연구개발 목표를 고려한 데이터 제공 준비부터 가공, 수집·생성, 분석 등 데이터 제공·분석 소요 비용 지원 가능

활용단계	업무유형	지원내용
데이터 제공 준비	기획·설계	· 수요기관의 비즈니스 이해, 데이터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추진 방향, 추진 일정, 수행 계획 등 데이터 활용 추진 전반의 계획 수립
	데이터식별	· 수요기관의 연구개발 목표를 고려하여 보유 중인 데이터 및 추가 수집(크레이션 포함)이 필요한 데이터 식별
	연구계획 협의	· 수요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연구 목적과 데이터 활용 범위, 데이터 제공 수준, 분석환경 필요사항을 사전 검토
	심의지원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및 데이터심의위원회(DRB) 심의 신청을 위한 자료 사전 점검 및 보완
데이터 가공	전처리	· 서비스 개발 또는 데이터 분석 요구사항에 따라 이종, 다종 데이터 테이블 또는 컬럼의 연계 활용을 위한 이산, 집합 등 · 자료 또는 정보의 기계 판독가능(machine readable)형태로 변환
	품질	· 분야별업종별 데이터 테이블 및 컬럼 표준화, 품질개선(클렌징) · 데이터 활용성 향상을 위한 빈 컬럼 내 데이터 추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 등 · 값 필터, 정확성 검사 및 데이터 값의 보정
	코딩	· 오프라인 데이터의 DB화, 디지털화를 위한 코딩 · 통계분석 정보 생산을 위한 코딩
	정보추출 또는 조합	· 이미지·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태깅, 스크리핑 · 집단화된 콘텐츠의 DB화를 위한 메타데이터 구축
	가명처리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
	라벨링·태깅	· 의료영상, 생체신호, 텍스트 등 데이터 유형별 라벨링 및 어노테이션 작업
데이터 제공	제공·분석 환경 반영	· 공급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셋을 수요기관에 제공 · 제공 데이터는 기관 내 안심활용센터 또는 보안분석환경에 탑재하여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데이터 제공 항목, 건수, 기간 등을 기록한 데이터 제공 내역서 작성 및 제출
	분석·시각화	· 기술적, 통계적 분석 기법을 통해 데이터 분석 결과 도출 · 데이터 분석 결과를 지도, 그래프, 차트, 분석 대시보드 등으로 변환하여 시각화 처리 · R, Python, SAS, SPSS 등 통계분석 툴 제공 · 분석 결과 반출을 위한 심의 지원 및 반출 승인 절차 협조
	클라우드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데이터 활용	모델 학습	·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모델 학습
	검증 및 개선	· 성능 평가 및 모델 개선
	활용 연계	· 제품 개발 및 인허가 등

- 의료 AI 데이터 활용 기반 연구·개발 목적에 부합하도록 과제 구성* 필요
* 신청 시 데이터 신청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구체적(구체화, 계량화)으로 제시 필요

- 사업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 수요기관에게 있음
- 본 사업에 부합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회계정산

-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정산 절차를 운영할 수 있음
- 회계정산은 사업 수행 종료 후 제출된 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 자료를 기반으로 수행하며, 협약 내용 및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산 여부를 확인
- 회계정산은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수행
 - 협약 내용 대비 사업비 집행 이행 여부 및 집행내역의 적정성
 - 자기부담금(현금) 우선집행 여부
 - 제출된 증빙자료의 적정성 및 집행내역과의 일치 여부
 - 불인정 항목, 불용액, 이자 발생 여부 등
 ※ 본 사업은 단년도 예산사업으로 회계정산의 범위는 '26년도 예산에 한함. 다만, 데이터 활용 등 성과관리를 위한 협약은 '27년까지 유효함
- 회계정산 과정에서 집행내역 또는 증빙자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정산 여부를 최종 판단
- 회계정산 결과는 정산 결과보고서 형태로 관리할 수 있으며, 사업비 관리 현황 파악 및 향후 사업 운영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필요시 회계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가이드라인 등의 보완 및 개선에 반영

□ 집행 관련 유의사항

- 공급기관은 사업 수행 협약에 따라 데이터 제공 준비, 가공, 수집·생성, 분석 등 비용을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정산 신청
 - 바우처는 공급기관이 데이터 제공, 가공, 분석환경 제공 등 직접 수행한 업무에 대해 계약금액 기준 정액 정산하며,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견적서, 내역서 등)를 근거하여 정산 신청
- 바우처 협약과정 또는 집행 후, **협약금액보다 실제 계약금액이 적은 경우** 남은 금액은 잔액으로 간주하며 해당 금액은 **사업 종료 후 사후 정산 또는 반환 처리**
- 바우처 및 자기부담금은 **중복 집행 또는 목적 외 사용 불가**
 - 중복 청구, 허위정산, 목적 외 집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전액 환수 및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 적용
- 바우처 자금은 공급기관의 직접 과업 수행을 위해서만 집행되므로, 공급기관이 수요기관에 데이터 가공 등 업무를 역으로 대행시키고 **바우처 예산을 수요기관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
- 기타 집행 관련 사항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바우처 운영지침(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별도 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중간점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집행 적정성 여부를 수시 확인할 수 있음**
- **데이터 제공 이후 의료 AI 연구개발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후속 연도 사업 수행 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가 부여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관리

-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공급기관과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현황 확인을 위한 **실적보고(월간 등), 이행점검, 자기부담금 점검** 등을 진행할 수 있음
 - 데이터 활용 결과보고서·우수 활용사례 등 **성과보고(5년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는 과업이 종료된 후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 예정

- 선정된 과제의 데이터셋은 데이터 카탈로그 및 메타데이터 활용
 - 데이터 공급기관은 데이터 재사용 관리를 위한 방안 수립
 - 공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공급기관, 수요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하며, **관계 법률 및 시행령 등을 참고**하여 진행함
 - (제재 기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협약 내용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음
 - (수요기관)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기부담금 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데이터 활용 결과보고서 및 성과보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현저히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급기관) 협약 또는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심의(IRB), 데이터심의(DRB) 등 필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협약된 범위 내 의료데이터 제공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공·지연·누락 등으로 사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다기관 공동연구 수행 시, 개별 기관의 중복 심의를 방지하고 신속한 연구 개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용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공용DRB)**를 통한 심의를 필수로 진행
 - (관련근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025.12) 내 P.23(공용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공용 DRB))
 - (기준) 다기관 과제이며, 심의 대상 데이터와 사용(분석)환경 유형이 동일한 경우* 해당 공동 심의 결과는 참여 병원(기관)별 개별 DRB 심의 결과로 같음
- * 위 경우가 아니면, 개별 심의 진행 가능
- (상호인정 절차) 과제 참여 공급기관 중 공급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 또는 DRB 개최 건이 가장 많은 기관의 심의 결과를 타 기관에서 준용 또는 검토 후(세부사항 조정은 가능) DRB 면제
 - 다기관 연구 진행 과정에서 수요기관-공급기관 간 애로사항 해결

□ 문의사항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 ① 보건의료데이터 활용포털 (<https://k-cure.mohw.go.kr/>)
- [의료 AI 지원사업] > [의료 AI 바우처] > [문의하기]
- ② 사무국 이메일(healthdata@khis.kr)을 통해 문의

붙임1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 소개

1] 사업 개요

- (목적) 의료기관의 데이터 활용 기반 및 연구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파편화된 임상·공공 데이터의 결합 및 안전한 활용 네트워크 구축
- (사업 기간) 2020년부터 ~
- (주요 사업내용)
 - 1)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기반구축 지원('20.~)
 - 의료데이터 활용 인프라, 데이터 제공체계 및 호환성 고도화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컨소시엄 단위의 거버넌스 체계 확대
 - 산·학·연·병 간 의료데이터 활용연구 활성화 추진
 - 2) K-CURE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구축('22.~)
 -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및 관리
 - 암 임상·공공 라이브러리 구축, 암 데이터 결합 서비스 지원
 - 의료데이터 안전한 활용을 위한 권역별 안심활용센터 구축

【 임상데이터 네트워크(K-CURE) 구축사업 】

